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1. 16 선고 2017가단99696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명

담당변호사 최익준, 최윤희, 박동인

피고1. B

2. C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

담당변호사 이종훈

3. D

4. E

5. F

6. G

변론 종결2018. 9. 21.

판결 선고2018. 11. 16.

주 문

1.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.
2. 피고 B, D, E, F, G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3,805,128원 및 그 중 29,984,784원에 대하여는 2015. 10. 2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, 30,800,000원에 대하여는 1994. 4. 16.부터 1994. 5. 15.까지는 연 11.5%, 그 다음날부터 1995. 10. 22.까지는 연 17%, 그 다음날부터 2015. 9. 30.까지는 연 18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
3.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, D, E, F, G 사이에 생긴 비용은 위 피고들이,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비용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.

4.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3,805,128원 및 그 중 29,984,784원에 대하여는 2015. 10. 2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, 30,800,000원에 대하여는 1994. 4. 16.부터 1994. 5. 15.까지는 연 11.5%, 그 다음날부터 1995. 10. 22.까지는 연 17%, 그 다음날부터 2015. 9. 30.까지는 연 18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
이 유

1. 피고 B, D, E, F, G에 대한 청구

가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나. 근거

피고 B, D, F에 대한 청구 :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피고 E, G에 대한 청구 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2. 피고 C에 대한 청구

가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, D, E, F, G과

연대하여 원고에게 193,805,128원 및 그 중 29,984,784원에 대하여는 2015. 10. 2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, 30,800,000원에 대하여는 1994. 4. 16.부터 1994. 5. 15.까지는 연 11.5%, 그 다음날부터 1995. 10. 22.까지는 연 17%, 그 다음날부터 2015. 9. 30.까지는 연 18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

피고 C은 자신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이 사건 채무 역시 면제되었다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은 2014. 5. 20. 수원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5. 6. 9. 같은 법원 2014하단10003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, 2015. 8. 18. 같은 법원 2014하단100034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결정이 2015. 9. 2.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라 그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.

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C의 채무는 조세채무에 해당하므로 위 면책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채무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,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원고와 체결한 납세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일 뿐이므로 이에 의하면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조세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.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그러므로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위 면책결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어 자연채무가 되었고 이로써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, 원고의 피고 B, D, E, F, G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.

판사김영희

별지